

소송허가결정 고지서

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기1434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,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[위 소송허가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(2026마7430)으로 2026. 9. 28. 확정되었음]. 아래 제2항의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므로, 다음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제외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1. 사건,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표시

가. 사건 :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754 증권관련집단소송

나. 원고(대표당사자) : 김민정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누리

담당변호사 김주영, 송성현, 김동욱, 오택림, 박정이

다. 피고 :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해성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광장

담당변호사 정다주, 김상훈, 한채영, 김지현, 김동원

2. 총원의 범위

피고가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제출·공시한 2021. 3. 18.부터 이 사건 횡령 사건의 공시일인 2022. 1. 3. 사이에 피고 주식을 취득한 자로서,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22. 1. 3.부터 이 사건 횡령 사건 공시일 당시의 주가(142,700원)가 회복된 2022. 9. 5.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자

3. 청구의 취지

피고는 총원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청구원인의 요지

피고는 2007. 2. 7.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갖추거나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공시하였고, 또 거액의 자금 횡령 사실에 대해서도 중

요사항의 거짓 내지 누락 기재를 하였는바,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·부실 기재를 믿고 피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횡령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. 따라서 피고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제출 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단소송 총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그 손해액의 경우, 피고의 주가는 이 사건 횡령 사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개선되었을 것이므로 실제 손해액은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일부 청구로서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5. 제외신고

가. 제외신고

1) 제외신고는 구성원이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.

2)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접 위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소송의 판결 및 소송상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. 즉,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,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.

나.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

이 사건 집단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그 고지를 받은 날(법령에 의하여 고지받은 날로 간주되는 날 포함)로부터 60일 내에 이 법원 2022가합754 증권관련집단소송 담당재판부(제11민사부)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제외신고서 양식은 첨부된 문서와 같으며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(seoul.scourt.go.kr) 하단 「양식」란의 '민사' 분야 항목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다. 구성원의 권한

1)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)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6.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

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고, 성공보수는 판결, 화해, 조정성립 등으로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원(지연이자 포함) 중 1심 20%(부가가치세 별도, 이하 같음), 2심 25%, 3심 30%의 각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 소송에 필요한 제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지출한 후 전부 또는 일부 승소 시 권리실행금(통상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기 전의 금원을 말합니다)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,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전부 패소 시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고 일부 패소(일부 승소) 시 권리실행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충당한 후 나머지를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 한편, 변호사보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.

7. 유의 사항

가.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.

나.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는 사항은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의 「대국민서비스」 웹페이지 상단의 「공고」 메뉴 중 「증권관련집단소송」란에 게시되므로,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7.

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강희석

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참여관 장선명
전화 : 02-2192-1222

제외신고서

사 건 2022가합754 증권관련집단소송
원 고 김민정
(대표당사자)
피 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

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()은(는)
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8조 제1항
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.

20 . . .

구성원 (날인 또는 서명)
(연락처)

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

◇ 유 의 사 항 ◇

1.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,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2.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(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)를 기재하기 바랍니다.